

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(제8조 관련)

구분	국토계획평가 대상	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
1. 종합계획 · 지역계획	가.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	「국토기본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나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
	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· 군기본계획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
	마. 삭제 <2017. 2. 7.>	
	바. 「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	「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2. 기간시설계획	가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	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
나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	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전
다. 「도로법」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	「도로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라. 「철도건설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	「철도건설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할 때
마. 「항만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	「항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할 때
바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	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할 때
사. 「항공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	「항공사업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와 협의할 때
아. 「공항시설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	「공항시설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자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	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할 때
차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	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3. 부문별 계획		장과 협의할 때
	카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	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가. 「주거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	「주거기본법」 제5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나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	「농어촌정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
	다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 계획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
	라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	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마. 「지하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 계획	「지하수법」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	바. 「산림기본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	「산림기본법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
	사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	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
아. 「연안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	「연안관리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자. 「연안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	「연안관리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차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	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카. 「관광진흥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	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
타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·휴양기본계획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
비고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	